

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42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3년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승인통계 기준에 따르면,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33,590명으로 김포시의 총인구 491,249명 중 6.8%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요구됨.
- 이에 따라, 본 조례에서 ‘상호문화’ 라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, 이를 바탕으로 내국인에 대한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김포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개정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등 용어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나.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가(안 제4조)
- 다. 지원 대상으로서,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재해·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을 추가(안 제5조)
- 라.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, 관련 축제·행사 참석자에 대한 무료 교통수단 및 체험행사 편의 제공 등 신설(안 제6조)
- 마. 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 정비(안 제7조)
- 바. 상호문화거리의 지정 및 조성 근거 신설(안 제12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 행정적 뒷받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위한 지원 사항 전반에 대해 개정하는 사안임.
- 안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관내 이주배경청소년 현황,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사항과 맞춤형 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대한 기부·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바탕으로 한다면, 조례상 지원의 근거는 명확해야 할 것이나 본 조례에서는 지원의 대상 및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직접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입법례와 같이 별도의 지원 근거 조문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.

※ [참고] 법제처 지침서상 입법례

조례명	관련 조항
「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	제3조(태양열 온수기 설치 비용 지원) ① 창녕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한다.
「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	제4조(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⑤·⑥ (생략)

- 현행 조례상 ‘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’와 ‘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’를 통합하여 개정안 제7조의 ‘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’로 변경하게 된 경위 및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 현행 조례의 위원회와 비교하였을 때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현행	개정안
제7조(협의회 설치)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”(이하 “ 협의회 ”라 한다)를 둔다.	제7조(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 (이하 “ 위원회 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제8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<p>1. 지원계획 수립,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</p> <p>3.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1. 지원계획 수립,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3.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</p> <p>4.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</p> <p>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
<p>제14조(자문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“<u>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</u>”(이하 “<u>자문회의</u>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제15조(자문회의 기능)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

○ 안 제8조 제3항에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규정하는 성별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 위반 소지는 적어 보이나, 이후 상위법령 개정·폐지 등에 따라 해당 비율 등이 변동될 시 조속히 본 조례에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서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